

# 대법원 2024도13347 위증 사건 보도자료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고인이 된 연예인 A의 소속사 대표인 피고인이 A와 관련된 제3자의 명예훼손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의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위증으로 기소된 사안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도13347 판결)

## 1. 사안의 개요

### 가. 전제사실

-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소속사 연예인인 A는 '피고인의 강요로 술접대를 하고 B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취지의 문건을 남기고 자살함
- 당시 국회의원이던 C는 2011년 'B가 A로부터 생전에 술접대와 성상납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적시하였다'는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됨
- 피고인은 2012년 위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였고, C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3년 B 등의 처벌불원의사에 따라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종국됨

### 나. 공소사실의 요지 → 위증

- 피고인은 2012. 11. 12. C에 대한 위 명예훼손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함

- ① 피고인은 2007. 10.경 새롭게 전속계약을 체결한 신인배우인 A를 모임참석자들에게 소개시켜주기 위하여 중식당에 데려갔는데도, '2007. 10.경 중식당에서 B의 동생이 주선한 식사자리에 A를 대동하고 간 사실이 없고, 중식당에서 그들을 우연히 만나 동석했다'는 취지로 증언
- ② 피고인은 2009. 7. 2.경 일본에서 지인에게 전화하여 위 중식당 모임 시 A를 일찍 집에 보낸 것으로 경찰에 진술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는데도, '지인에게 그와 같은 부탁을 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
- ③ 피고인은 2008. 10. 28. 유흥주점에 B의 아들이 참석하는 것을 알면서 A와 함께 유흥주점에 갔고, 모임이 끝날 때까지 A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B의 아들이 참석하는지 몰랐고, A는 유흥주점에 잠깐 있다가 나갔다'는 취지로 증언
- ④ 피고인은 A와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있는데도, '자신이 A나 직원들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
- ⑤ 피고인은 2008. 5. 17. 태국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칠 때 A 측으로 하여금 프로골퍼의 항공료 약 100만 원을 부담하게 하였는데도, 'A 측으로 하여금 프로골퍼의 항공료를 부담하게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

## 2. 소송경과

### 가. 제1심 ➡ 일부 유죄[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 ①, ③ 부분 유죄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 ②, ④, ⑤ 부분 이유 무죄

### 나. 원심 ➡ 전부 유죄[징역 1년 6월]

- ▣ ① ~ ⑤ 모두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되고,

이에 부합하는 증인의 진술 등을 믿을 수 있음

- ▣ ④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증언 당시 A에 대한 폭행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이었고, 증언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됨

### 3. 대법원의 판단

#### 가. 쟁점

- ▣ 피고인이 위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 원심의 소송절차에 불고불리 원칙 및 공판중심주의 위반의 잘못이 있는지 여부

#### 나. 판결 결과

- ▣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 수긍)

#### 다. 판단 내용

- ▣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고불리 원칙, 공판중심주의, 위증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